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49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 장경태・이건태・문정복

서영교 • 안규백 • 조계원

한창민 • 박균택 • 김승원

전현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 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 불로 인해 5개 시·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 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제2조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선거일"을 "선거일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로 한다.

4. 식목일(4월 5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4. 식목일(4월 5일)</u>
<u>4.</u> ~ <u>8.</u> (생 략)	<u>5.</u> ~ <u>9.</u> (현행 제4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	<u>10.</u>
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u>선거일</u>	선거일 및 같은 법 제35조제1
	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
	<u>거일</u>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